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211
번 호	

제출년월일 : 1996.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이유

현행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흡수·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불필요한 시간·예산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연구·의결” 기능에 “자문” 기능을 추가 함(안 제1조 및 제4조 제6항).

나. 위원을 “임명직 위원(시소속 공무원)”과 “위촉위원(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 위원 5명이내”를 삭제하며 안전에 따라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다. 현행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총무국장”을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하여 위원회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 함(안 제2조 제2항).

라. 현행 위원회 결정 사항중 관련법이 폐지된 것을 삭제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흡수 통합함(안 제3조).

○ 삭제 (안 제3조 제6호 및 제7호)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개혁법 폐지)
- 농지개발심의회의 기능 (농지화대개발촉진법 폐지)

○ 신설 <흡수·통합> (안 제3조 제19호 내지 제25호)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제4조)
 -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 (영주시제안규칙 제12조)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심의 기능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기능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
 - 모자복지위원회의 기능 (모자복지법 제6조)
 -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 마.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의안제출 기한을 “24시간”전에서 “2일” 전으로 하고,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던것을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회의 결과는 간사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 바. 위촉 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위촉 및 의안 배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위촉위원은 사전에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의안 배부는 회의개최 통지와 함께 하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삭제 함 (안 제4조 제8항)
- 사.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 타법령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이 간사가 되던것을 간사는 “결정사항 담당계장”으로 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함 (안 제6조 제2항)
- 아. 동조례 개정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규칙을 부칙에서 개정 함
-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개정 (안 부칙 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련자료 : 붙임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규정에”를 “기타 규정에”로 하고, “심의·연구·의결”을 “자문·심의·연구·의결”로 하며, “위하여”를 “위한”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은 시소속 국장, 담당관, 과·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같은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같은조 제4항중 “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고, “정하여”를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중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제19호를 제26호로 하며, 제19호 내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영주시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22.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선정 및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심의
- 2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24. 모자복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25.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4조 제3항중 “24시간”을 “2일”로 하고, “간사”를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4항 중 “간사는”을 “기획담당관은”으로 하고, 제6항중 ”심의·연구·의결“을 ”자문·심의·연구·의결“로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항을 삭제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을 “결정사항 담당계장”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1.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 한다

2.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중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 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 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 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기타 규정 에 자문·심의·연구 ·의결 위한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된 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 한을 대행한다 <단서신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 원장 1인 및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다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국장 · 담당관·과·소장 중에서 15인 이 내로 한다. 단, 각 분야별로 전문적 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필 요한 경우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이나 학계, 그밖의 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위원은 시소속 국장, 담당 관, 과·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 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④ 위원장은 안전의 내용에 따라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회 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후단신설>	④ ----- 임명직 위원 ----- ----- 정하고, 안전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 ----- 이 때 위촉 위원을 해당 안전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 5 <생 략> <u>6.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u>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u> 8 ~ 18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조(결정사항)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농지법(제정 '94.12.22 법률 제4817호)에 의거 "농지개혁법 폐지" 7. <삭 제> 농어촌정비법(제정 '94.12.22 법률 제4823호)에 의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 8 ~ 18 <현행과 같음> 19.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영주시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2.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제4조, 동조례 시행 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응자대상선정 및 응자금 상환기한 연장심의 2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4. 모자복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 헌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 설>	25.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9. <생략>	26. <현행 제19호와 같음>
제4조(회의) ①, ② <생 략>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2일 기획담당관 ④ 기획담당관은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⑧ <삭 제>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 ③ <생 략>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정사항 담당계장 <단서삭제> ③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 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안)
<p>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용자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p> <p>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p>

신·구 조문 대비 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현 행	개 정(안)
<p><u>제2조(위원회 설치)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자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총 무국장, 사회사업국장, 사회진흥과장 또는 사회과장으로 하고 그의 용자대상 선정과 관련이 있는 지역 인사 또는 기관단체 임직원 중 3인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u></p> <p><u>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u></p> <p><u>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용자 가구 선정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한다.</u></p> <p><u>제4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u></p>	<p><u>제2조(위원회 설치) <삭 제></u></p> <p><u>제3조(위원회 기능) 시장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u></p> <p><u>제4조(위원회의 결정) <삭 제></u></p>

관 련 자 료

농지법 부칙 (제정 '94. 12. 22 법률 제4817호)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농지개량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4. 농지임대차관리법
5. 지력증진법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정 '94. 12. 12 법률 제4823호)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재정관련 사항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영주시제안규칙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및시행규칙

○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 설치)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자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진흥과장 또는 사회과장으로 하고 그외 용자대상 선정과 관련이 있는 지역인사 또는 기관단체 임직인중 3인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용자 가구 선정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한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 법

제12조(가정의례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가정의례준칙의 보급·실천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가정의례선진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생략> .

○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직무) ① <생략>

② 실천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계몽
2.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건의
3. 기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

□ 모자복지법

○ 법

제6조(모자복지위원회) ①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모자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② <생략>

③ 시·군·구에 두는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당해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94. 3. 5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4.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가, 나 <생략>

다. 공개·비공개 심사

(1) 공개·비공개 결정기관

- 공개·비공개 여부는 처리과의 장이 결정(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 내부결재)하되, 처리과의 장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당해 기관내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구성인원 : 소속 공무원 및 필요시 당해기관 퇴직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인사 참여 (5인 이내)

- 심의내용

- 특정정보의 공개·비공개에 관한 자문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 제공

*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기구 활용 가능
<이하 생략>